

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년 9월 14일
복지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년 9월 5일, 금천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23년 9월 5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4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최 중
제1차 복지건설위원회(2023년 9월 14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 및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조례」에 따라 환경위원회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환경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환경위원회의 목적 변경(안 제1조)
- 환경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변경(안 제2조제3호 및 제4호, 제3조제1항제1호)
- 환경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구성 시 성별균형 고려(안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3항)
- 환경위원회 내 분과위원회 명칭 및 기능 변경(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)

- 분과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조항 신설(안 제5조제7항 신설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추병수

나. 검토의견

1) 개정 이유

-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환경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임

2) 주요 내용

- 환경위원회의 목적 변경(안 제1조)
「탄소중립기본법」의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정책을 인용하여 목적 내용을 변경함
- 환경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변경(안 제2조제3호 및 제4호, 제3조제1항제1호)
「서울특별시 금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 조례」에 따라 설치된 금천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 사항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
- 환경위원회 내 분과위원회 명칭 및 기능 변경(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) 정책분과·실천분과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함
- 분과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조항 신설(안 제5조제7항 신설)
분과위원회의 의결을 본 위원회의 의결로 간주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

다. 검토의견

-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환경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그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론요지 : 생 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